

## 제8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맛있는 단편영화 제작지원 2022 지원규정

### 제작지원 신청 관련 규정

1.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에는 내용의 교체나 보완이 불가하다.
2.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동일 신청자가 2개 작품 이상 신청 시 신청 작품 전체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1인 또는 1팀당 1개 작품 신청 가능)
4.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 및 선정작에서 제외된다.
5. 타인 명의로 지원 신청하거나, 심사위원회가 표절 작품 또는 표절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6. 타 단체 혹은 기금의 지원이 확정된 작품은 본 프로젝트의 제반 사항과 배타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 영화제와 협의 하에 지원이 가능하다.

### 제작지원 작품 관련 규정

7. '맛있는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은 서울국제음식영화제와 서울영상위원회,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8. 지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 대상자(연출자 또는 제작사)에 귀속된다.
9. 지원약정은 지원 작품 선정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체결하며, 지원금은 약정 체결 후 서울영상위원회 및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 지급된다.
10. 지원금 지급, 정산, 결과 보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영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11. 후반작업 현물지원은 서울산업진흥원(SBA)과의 협약 하에 제공되며, 세부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지원 대상자,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조율하여 진행한다.
12. 지원 작품은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13. 제작지원금과 현물지원을 포함, 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내역을 초과하는 제작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14. 지원 작품은 2023년 7월 31일(일)까지 제작이 완료된 완성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5. 지원 작품은 2023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9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 상영될 수 있다.
16. 지원 작품의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상영 시 '관객과의 대화' 등 지원 대상자의 공식 행사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17. 제 9 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이전 타 영화제에서의 상영에 대해서는 서울국제음식영화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8.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제 9 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기간 외 상영회 및 기타 사업을 위한 추가 상영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19. 상기 지원규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철회될 수 있다.